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

3. 주요내용

가.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(안 제18조제1항제2호)

- 1)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권위탁업자 등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송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대한 회신을 받는 기간 단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'24.3.26.~5.7.

3) 행정규제 : 규제 강화(규제영향분석서 첨부)

대통령령 제 호

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1개월”을 “2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상당한 노력의 기준)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 당한 노력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 한다.	제18조(상당한 노력의 기준) ①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에게 저작권자나 그의 거 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 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 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 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<u>1개</u> <u>월</u> 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일</u> ----- --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469